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지혜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903
----------	-------

발의연월일 : 2026. 1. 8.

발 의 자 : 박지혜 · 권향엽 · 김승원
박해철 · 안도걸 · 이주희
김남근 · 한정애 · 위성곤
조인철 · 최혁진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전환이 산업 전반의 핵심 과제로 부상하면서,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효율 향상, 친환경 공정 전환 등 녹색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음. 이로 인해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고, 중소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의 법적 명확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에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을 추가함으로써, 기후·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활동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향후 관련 연구개발 사

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12호 신설).

법률 제 호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2호를 제1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중소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이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 여야 한다. 1. ~ 11. (생 략) <u><신 설></u>	제9조(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 ① ----- ----- ----- ----- -----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 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과 관련된 중소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사업</u>
<u>12.</u> (생 략) ② (생 략)	<u>13.</u> (현행 제12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